



인천공항 공급망 행동규범(안)

Incheon Airport Suppliers
Code of Conduct





목차

1. 서문
2. 행동규범 개요
3. 행동규범 I : 윤리 및 반부패
4. 행동규범 II : 환경
5. 행동규범 III : 인권 및 노동
6. 행동규범 IV : 안전과 보건
7. 행동규범 V : 경영시스템

서 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효율적 건설·관리·운영을 통해 세계적 공항전문기업 육성, 항공운송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 하에 2001년 개항 이후 공사와 관계기관, 협력업체들의 부단한 노력과 긴밀한 협력으로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 국제여객 세계 5위, 화물 세계 2위라는 업적과 함께 명실상부 세계 리딩공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윤리경영, 인권경영, 지속가능경영, 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협력기관들은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대해 더욱 높은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국제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팔로워가 아니라 선도적 경영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인천공항, 그리고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쟁력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협력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여 더욱 공고한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고자 국제 규범과 기준, 법률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 공급망 행동규범’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공급망에 속한 협력회사들이 행동규범의 실천에 동참하여 줄 것을 권장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협력기관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개요

1. 행동규범 제정근거

본 행동규범은 유엔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비준한 기준, 협약, 대한민국 정부정책 및 국내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규정 및 정책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에 포함된 내용이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 행동규범 적용대상

본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물품, 용역,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 및 단체(이하 '협력회사'라 함)가 포함되며,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는 해당 기관의 거래업체에게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대상기관의 책임과 역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모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구성원들에게 행동규범의 내용을 전파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협력회사에 대해 각 기관 및 단체의 의지에 반하여 어떠한 강제력도 가지지 않으며 상호협력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적 기업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 행동규범이 모든 기준 사항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정기적으로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행동규범 I : 윤리 및 반부패

1. 협력회사 임직원은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 협력회사 임직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약속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다. 협력회사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 임직원은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동참합니다.

- 가. 협력회사 임직원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지시, 직장 괴롭힘 등의 비윤리적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협력회사 임직원은 불공정 거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 가. 협력회사는 시장지배적 지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에 동참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 나. 협력회사는 타기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 되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다.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업의 수행으로 수집하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행동규범 II : 환경

1. 협력회사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 보고사항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재활용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 임직원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있어 환경에의 영향을 항상 고려하며 일상 업무에서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3. 협력회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이나 발생하는 폐기물 등 유해물질을 적절히 분류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며,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다.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내외이해관계자에 환경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복원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행동규범 III : 인권 및 노동

1.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책정하며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다. 협력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아동노동도 행하지 아니하며, 원자재 구입 등 거래 시 이와 연루된 업체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라.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담당직무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된 교육사항을 성실히 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불합리한 차별을 반대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보수, 복지,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협력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지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규범 IV : 안전과 보건

1. 협력회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국가별 법률 및 규제(필요한 경우¹⁾) 공사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산업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사업장 및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위험인자를 임직원에 공개해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임직원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다.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합니다.

3.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또는 특수 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층의 근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1)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및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적용되는 도급사업

행동규범 V : 경영시스템

1. 협력회사는 행동규범 준수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윤리 및 반부패,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과 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교육 및 전파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합니다.
- 다. 협력회사는 협력회사의 거래업체에게도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협력회사는 행동규범 준수의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가. 협력회사는 필요 시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ferences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https://www.motie.go.kr/motie/py/sa/oe/guideline/oecdguide.jsp>

2. The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https://www.responsiblebusiness.org/code-of-conduct/>

3. UN 글로벌컴팩트 10대원칙

<http://unglobalcompact.kr/about-us/10point/>

4. SA8000 표준 (SA8000 Standard)

<https://sa-intl.org/resources/sa8000-standard/>

5. UN 세계인권선언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